

**<붙임1> 신의료기술 결정(조정)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
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회신**

연번	분류	신청행위명	회신내용	비고	신청기관명
1	제3장	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/혈류측정술 Coronary pressure wire [조정신청]	<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> 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-267 관상동맥조영 coronary angiography	현행유지	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
2	제9장	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Image-free Computer assisted Navigation System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[조정신청]	<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> 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자-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-1 인공관절재치환술	현행유지	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

<붙임2> 신의료기술 결정(조정)신청 행위 중 반려 항목에 대한 회신

연번	분류	신청행위명	회신내용	비고	신청기관명
1	제2장	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[현장검사] Fetal Fibronectin Qualification [Point-of- care test] [조정신청]	검사방법 및 원리가 기등재 행위인 '너13 태아 피브로넥 틴 정성검사 [현장검사]'와 달라 신의료기술평가(안전성· 유효성 평가)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의료행위전문평 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 감안	반려	서울대학교병원